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6. 5.

발 의 자 : 신봉현 위원 외 1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(2005.8.4 법률제7670호) 및 동법 시행령(2006.2.8 대통령령제19322호)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함.(안 제3조제1항)
- 나. 월정수당은 월 2,052,500원로 함.(안 제3조제2항)
- 다.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.(안 제3조제3항)
- 라. 국내여행을 할 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 지급기준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현실화함.(안 별표1)

3. 개정근거

- 가. 지방자치법(2005.8.4 법률제7670호)제32조
- 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(2006.2.8 대통령령제19322호)제15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6. 기타사항 : 2006년 5월 1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,052,500원으로 결정함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 “동법시행령”을 “동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월정수당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
 ②월정수당은 월 2,052,500원으로 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 ③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일비”를 “천지교통비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6조 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분 \ 지급 기준액	철도 노선	선박 박임	항공 공임	자동차 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
비고 : 1.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-----동법 시행령-----</p>
<p>제3조(회기수당)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참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③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②월정수당은 월 2,052,500원으로 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③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
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<u>일비</u>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-----</p> <p>-----현지교통비,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							개정안							
<p>[별표 1]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6조 제1항 관련) (단위: 원)</p>								<p>[별표 1]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6조 제1항 관련) (단위: 원)</p>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인당)	숙박비 (10일당)	식비 (1일당)	지 역 차 별 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 통 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의 장 부 의 장	1등급	2등급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	의원	1등급	2등급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의 원	2등급	2등급액	정액	정액	10,000	25,000	18,000								
<p>비고 : 1.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(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음,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.</p> <p>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</p> <p>3.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	<p>비고 : 1.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</p> <p>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